

# 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
| 장형태 | 630702-1846614 |

## 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|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| 상호                | 종류 | 지출금액계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137-19-36821        | 루원보약국             | 일반 | 18,340         |
| 137-20-56070        | 사랑온누리약국           | 일반 | 312,934        |
| 140-11-01808        | 이화별의원             | 일반 | 29,200         |
| 809-82-00081        |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검단나은의원 | 일반 | 36,800         |
| 604-18-92122        | 메디피아약국            | 일반 | 50,000         |
| 852-94-01582        | 공감 마취통증의학과        | 일반 | 46,200         |
| 231-92-01802        | 티움이비인후과의원         | 일반 | 11,000         |
| 587-95-01399        | 루원탐내과             | 일반 | 63,000         |
| <b>의료비 인별합계금액</b>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<b>567,474</b> |
| <b>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</b> |                   |    | <b>0</b>       |
| <b>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</b> |                   |    | <b>0</b>       |
| <b>인별합계금액</b>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<b>567,474</b> |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
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
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
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250115-87293588

-1-

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  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